

1. 개정이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규정 정비 (안 제12조의4 제1항)

- 1) 「의료법」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근거 조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정비

* 종합병원 근거 조항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같은 호 바목으로 개정 ('20.3.4.)

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기준 완화 (안 제12조의4 제2항)

- 1)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추가

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안 제16조의2제3항)

- 1) 현행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장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별표 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차목 및 카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4(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제12조의4(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① -----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바목----- ----- ----- ----- ----- -----.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 ----- -----.
<신 설>	1.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u><신 설></u>	<u>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u> <u>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u> <u>보건의료기관</u>
<u><신 설></u>	<u>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u> <u>나목에 따른 치과의원</u>
<u><신 설></u>	<u>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u> <u>나목에 따른 치과병원</u>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16조의2제3항 관련)

시 설	면 적	장 비	비 고
1. 구강진료실	40m ² 이상	가. 치과용 유닛 제어 2대 나. 진료용의자 다. 공기압축기, 석션기 라. 멸균기 마. 구내 X-ray 촬영기 바. 치석제거기 사. 광중합기 아. 불소이온도입기 자. 아말감 혼합기 차. 진료물품 보관 냉장고 카. 냉난방기	유닛 제어 2대 (장애인 유닛 제어 포함) 이상을 이용하여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장비
2. 구강보건교육실	33m ² 이상	가. 교육용 칫솔모형 나. 교육용 치아모형 다. 칫솔질용 세면대 라. 간이 위상차 현미경 마. 컴퓨터 바. 모니터 사. 구강카메라 아. 교육 상담용 탁자 자. 교육물품 보관장 차. 냉난방기	
3. 구강보건사업실	27m ² 이상	가. 컴퓨터, 프린터 나. 전화기, 팩스 다. 사무용 책상, 의자 라. 회의용 탁자, 의자 마. 복사기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16조의2제3항 관련)

시 설	면 적	장 비	비 고
1. 구강진료실	40m ² 이상	가. 치과용 유닛 제어 2대 나. 진료용의자 다. 공기압축기, 석션기 라. 멸균기 마. 구내 X-ray 촬영기 바. 치석제거기 사. 광중합기 아. 진료물품 보관 냉장고 자. 냉난방기	유닛 제어 2대 (장애인 유닛 제어 포함) 이상을 이용하여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장비
2. 구강보건교육실	33m ² 이상	가. 교육용 칫솔모형 나. 교육용 치아모형 다. 칫솔질용 세면대 라. 간이 위상차 현미경 마. 컴퓨터 바. 모니터 사. 구강카메라 아. 교육 상담용 탁자 자. 교육물품 보관장 차. 냉난방기	
3. 구강보건사업실	27m ² 이상	가. 컴퓨터, 프린터 나. 전화기, 팩스 다. 사무용 책상, 의자 라. 회의용 탁자, 의자 마. 복사기	